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28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장호섭 의원 등 7명
- 발의일자: 2024. 11. 6.(수)
- 회부일자: 2024. 11. 6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 
(2024. 11. 28.)

## 2. 제정이유

-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돕고,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## 1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지도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## 4. 관계법령

- 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1조~제4조, 제11조, 제20조, 제26조, 제28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「아이돌봄 지원법」(2012.2.1. 제정)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,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고, 같은 법 제20조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
-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교육·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현재 12세 이하 달서구 아동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기관(달서구가족센터)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고, 정책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달서구 인구 및 12세 이하 아동 현황

(단위: 명)

|                  | 2020              | 2021              | 2022              | 2023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달서구 아동<br>(아동비중) | 55,340<br>(9.91%) | 51,753<br>(9.50%) | 49,597<br>(9.24%) | 46,479<br>(8.81%) |    |
| 달서구 인구           | 558,631           | 544,926           | 536,989           | 527,781           |    |

달서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 아동수 현황

(단위: 명)

| 구분       | 시간제<br>기본형 | 영아종일제 | 질병감염<br>아동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|
| 2023. 12 | 832        | 35    | 22         |    |
| 2024. 09 | 922        | 23    | 29         |    |

달서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현황

(단위: 천원)

| 구분    | 합계        | 국비        | 시비        | 구비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2023년 | 6,893,000 | 4,825,100 | 1,033,950 | 1,033,950 |
| 2024년 | 4,945,386 | 3,461,770 | 741,807   | 741,807   |

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**

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